

소년법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f the Juvenile Offenders in Community Treatment

정 신 교**

차 례

- | | |
|------------------|-------------------------|
| I. 서 론 | Ⅲ. 소년법 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Ⅱ. 소년형사사법과 사회내처우 | Ⅳ. 결 론 |

• 국 문 요 약 •

소년법에 대한 시설내처우 보다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는 그 효과성에 있어서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 측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년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기관간의 협업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내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소년사법체계에서 소년법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볼 때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통합은 소년법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제도의 적극적인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 주제어 : 소년법, 사회내처우, 중간처우, 사회복귀

* 이 논문은 2015년 김천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됨(과제번호: gc-16045)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현대 형사정책의 목적에는 범죄의 예방, 사회질서유지,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재교육·재사회화·사회복귀 등이 있다. 범죄자에 대한 구금시설에서의 자유박탈적 처분을 통하여 교화하고자 하는 시설내처우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범죄인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¹⁾ 교정시설에서의 구금은 구금하는 기간 중의 재범방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하여 구금상태에서의 범죄를 학습하고 범죄에 오염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시설내처우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설내처우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구금시설 내에서 새로운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교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단기자유형 등 구금의 다변화이다. 이에는 자유형의 대체체재로서의 벌금형과 형의 각종 유예제도, 교정시설 밖에서의 처우를 의미하는 사회내처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내처우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서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교정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이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는 시설내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절감, 악성오염의 방지, 범죄자의 기존생활을 덜 침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더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 평가받고 있다.

1) 이재상·안경욱,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통권 제2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쪽; 오재환,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제도의 성립과 정당성”, 사회과학연구, 제15집,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13쪽.

소년법상 소년범은 소년부판사가 사건의 조사와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분류하여 심사한다(소년법 제32조 제7호 이하). 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사법 기관과 지역사회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호소년도 증가추세이다. 이는 여전히 소년 교정기관의 교정·교화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미흡한 면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소년범의 처우를 살펴보고 소년범의 개선교화를 위한 교정기관과 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소년형사사법과 사회내처우

1. 소년정책의 기본전략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하여 청소년은 손쉽게 음란물에 접근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매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년비행에 대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인 열악한 가정환경과 이에 대처할 사회적 보호망의 약화로 인하여 비행소년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소년범은 성장단계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범에 비하여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²⁾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7)의 수립이후, 4차에 걸친 범정부적 청소년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그 주요내용은 ① 자기주도적 역량강

화, ② 가족기능의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③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④ 청소년정책의 정비 등이다. 2017년까지 추진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권보장 및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개인여건에 맞는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2. 소년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자의 처우

1) 소년법의 동향

최근 소년범죄의 특성은 강력범죄화, 저연령화, 여성범죄의 증가, 누범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공식적인 소년범죄 통계수치의 변화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³⁾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형법범과 소년특별법의 변화추이를 보면³⁾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범죄의 인원과 구성비 현황은 2006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은 238.8건, 2012년 485.3건으로 증가 하였으나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산범죄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2) 범죄 유형별 동향

(1) 소년형법범

소년형법범의 범죄유형별 구성비는 2006년 재산범죄는 27,309명으로

2) 서주연, “미국의 소년교정시설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교정연구, 제57호, 한국 교정학회, 2012, 210쪽 이하.

3)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 14쪽.

5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35.3%이며 그 외 흉악범죄가 4.1%, 기타 범죄가 2.7%로 나타났다.⁴⁾ 전체적인 범죄양상을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소년형법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년폭력범죄는 2006년 42.5%였으나 2015년에는 37.9%로 감소하였다. 흉악범죄의 경우 2006년 4.1%였으나 2014년 5.0%, 2015년 4.8%로 감소하였다. 기타범죄는 2006년 2.7%에서 2014년 6.9%, 2015년 8.3%로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소년특별범

소년특별법범의 범죄유형별 구성비는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이 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21.5%로 도로교통과실범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뺑소니차량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다.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3) 연령별 동향

(1) 소년형법범

연령별 추이를 보면 2009년에는 14세 미만(10세-13세)이 9.3명, 14세-15세가 2,235.1명, 16세-17세가 2,441.2명, 18세가 2,046.6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14세 미만이 11.0명, 14세-15세가 1,961.8명, 16세-17세가 2,430.9명, 18세가 2,332.4명으로 2015년의 경우 14세 미만이 2.4명, 14세-15세가

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559쪽.

5) 앞의 책, 566쪽.

1,052.8명, 16세-17세가 2,273.8명, 18세 이상이 2,326.9명을 기록하였다.

지난 10년간 14세-15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16세-17세와 18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⁶⁾ 2015년의 경우 14세 미만의 범죄율이 2.4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통계에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 소년특별법

2009년 소년법이 개정된 후 2009년에는 소년 특별법범죄자의 45.7%가 16세-17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4세-15세 26.2%, 18세 22.6%, 14세 미만 5.5%의 순이었다. 이후 16세-17세와 18세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반면에 14세 미만과 14세-15세의 비율은 감소하여 2013년에는 16세-17세가 50.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18세 29.1%, 14세-15세 9.0%, 14세 미만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검토

위의 자료를 검토해 크게 두 측면의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형법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별법범의 감소추세이다. 형법범의 경우 재산범의 증가는 2006년 24.1%에서 2015년 49.7%로 10여년 사이에 25.6%나 증가한 점이다. 최근 강력범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561쪽.

2. 소년범죄자의 처우

1) 소년보호처분

(1) 소년보호관찰

〈표 1〉은 소년보호관찰 현황으로서 수감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포함된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10년 동안 소년 보호관찰 인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소년법의 개정(2008. 6)으로 수 감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독립적인 보호처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결 과로 보인다.⁷⁾

〈표 1〉 소년 보호관찰 실시인원 현황 (2006년~2015년)⁸⁾

연도	개시	종료	현원
2006	36,015	22,056	13,959
2007	38,515	22,816	15,699
2008	46,187	29,626	16,561
2009	56,700	35,629	21,071
2010	59,751	39,511	20,240
2011	60,116	38,289	21,827
2012	61,850	39,245	22,605
2013	55,724	36,283	19,441
2014	45,831	28,180	17,651
2015	42,318	26,816	15,502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613쪽.

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613쪽.

(2) 죄명별 현황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절도와 폭력범죄가 소년보호관찰의 주요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죄명별 현황은 강력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추세이며, 교통범죄 또한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와 기타범죄의 비율은 증가추세이다.

2) 소년분류심사원

(1) 설립목적과 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년의 수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년분류심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위탁된 비행소년의 개인적 자질과 소년의 환경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해당 소년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처우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⁹⁾ 분류심사¹⁰⁾는 소년의 가정 환경, 심리검사, 행동관찰, 보호자와의 상담, 각종 조회 등을 통해 소년의 보호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의 목적은 해당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 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분류 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9)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 제16호, 법무부, 2004, 24쪽.

10) 1995년 소년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분류심사는 ‘감별’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었다.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12조).¹¹⁾

(2) 분류심사 대상소년의 비행과 연령층

2015년에 수용분류심사 대상이 된 소년은 재산범이 1,902명(30.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특별법범 967명(15.6%), 강력범 656명(10.6%), 약물남용범 31명(0.5%) 순이다.¹²⁾ 연령별로는 16-17세가 2,843명으로서 전체의 4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14세-15세 1,761명(28.5%), 18세 1,095명(17.7%), 19세 이상 268명(4.3%), 14세 미만 213명(3.4%)의 순이다. 모든 범죄유형에서 16세-17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16세-17세의 비율이 56.6%로 다른 범죄보다 높았다.

3) 소년원

(1) 기관 현황

소년원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11)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630쪽.

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교육하는 기관이다.

소년원의 기능은 소년의 비행에 대한 사법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적 기능이 더욱 중시된다. 특히 국가는 소년의 보호자로서 인성교육, 직업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소년의 왜곡된 행동을 교정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교도소와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최초의 소년원은 경성 소년원이며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10개의 소년원이 있다.¹³⁾

(2) 분류처우 및 수용보호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 등 개별적인 처우를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분류조사는 소년의 가정환경, 교육환경, 비행경력 등 개인 생활사를 비롯한 성격, 적성, 지능 등 심리검사 및 정신이상의 유무 등 의학적 분류심사와 함께 보호자 상담도 실시한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소년법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처우심사위원회는 개별처우계획을 세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원은 소년원 송치의 경우 소년원의 중별은 지정하지 않고 소년원측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원수용 소년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년원 수용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매우 필요하며 효과적일 것이다. 즉

13) 수용인원은 2006년 1,468명이며 2009년부터는 수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2,775명을 기록하였고 2012년 이후 342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소년원을 초·중등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의료재활과정, 인성교육과정 소년원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소년원에서도 연령, 비행의 정도, 입원횟수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8호는 1개월 이하의 소년원 송치처분이고 동조 제9호 처분은 단기(6개월 이하)로 소년원에 송치되며, 동조 제10호 처분은 장기(2년 이하)로 송치된다. 처우기간은 보호소년의 교정태도, 사회적응 능력,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우기간은 다양할 수 있다.

Ⅲ. 소년법 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년법 사회내처우의 문제점

1) 교정기관의 이원화

범죄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하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이 있고 소년법과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과 교정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¹⁴⁾ 소년보호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원학교¹⁵⁾, 소년분류심

14) 정진수·김기환·유병철·이창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쪽 이하; 법무부(<http://moj.go.kr>).

15) 범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 대구읍내정보통신학교, 광주 고통정보산업학교,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 대전 대산학교, 청주미평여자학교, 안양 정

사원,¹⁶⁾ 대안교육센터¹⁷⁾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에서의 소년보호 사건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 검찰, 형사법원, 보호자·학교 또는 복지시설의 장에게 송치처분을 받은 사건을 담당한다. 교정본부산하에는 소년교도소가 있다. 소년교도소는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2007년에 교정국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법무부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교정본부로의 조직개편에 의해 본 부장의 직급이 상향되고 본부의 과와 인원이 일부 증원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인사와 예산, 정책결정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외청으로의 독립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보호관찰을 담당하던 보호국은 2008년도에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사후 교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보호국 산하의 보호 기획과와 범죄예방정책과는 범질서 선진화과와 범죄예방기획과로 재편 성됐고 소년과와 보호관찰과, 보호법제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센터 6개 기관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교정본부와 마찬가지로 범죄예 방정책국도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의 보호국과 크게 차이가 있는

심여자정보산업학교,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제주 한길정보통신학교가 있으며 소년원은 학교명을 복수명칭으로 사용한다.

- 16)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분류심사 및 주간 출석 상담조사, 법원의 조사·심리자료를 제공하고,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 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와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1977년 4월3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설립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덕, 춘천, 제주)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 17) 대안교육센터는 법원, 검찰청, 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며,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의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을 한다. 서울 남부, 북부, 부산, 광주, 청주, 창원, 인천, 대구, 안산대안교육센터가 있으며, 대전에는 솔로몬파크가 있다.

것은 아니다.¹⁸⁾

2) 소년법에 대한 법령의 미비

소년법¹⁹⁾이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우를 받는다. 그러나 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성년수형자와 같은 처우등급을 부여 받고 있다. 이 때 처우등급은 통일성 확보차원에서 수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수형자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지 않는다.²⁰⁾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대응정책은 소년 복지체계와 소년사법체계로 구분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사후처벌이 중심인 반면,²¹⁾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체계(사후보호단계별 연속적인 보호와 처우·지원)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18) 정진수 외, 앞의 보고서, 195-196쪽.

19) 소년법과 관련하여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0) 김진아, “소년수형자 문제유형에 관한 연구”, 교정실무 연구논집, 법무부, 2011, 창간호, 59쪽.

21) 김준호외, 청소년비행론(제2판), 청목출판사, 2011, 52쪽.

3) 소년 교정교육의 실효성 부족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²²⁾ 첫째, 대규모 소년원은 복합적인 업무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정책방향 분산,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대규모 소년원은 소년원 학생들의 나이별(10세~18세), 학력(초졸~대졸), 학업능력, 향후진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교과과정은 서울, 전주소년원(남자)이나 안양소년원(여자)에서, 자동차정비교육은 광주소년원과 부산소년원에서만 실시되기 때문에, 연고지 소년원에 배치되지 못하고 이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보호자의 면회, 학생의 개방 처우(외출, 취업 등), 사후 지도 등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일반학교의 교과교육과정을 유사하게 운영하는 현행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전공 교과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해당 소년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도 그 과목을 담당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의 경우 비교적 성인수형자에 비해 누범화 가능성은 낮으며 교육의 정도에 따라 범죄예방의 효과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²³⁾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

22) 안선영,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8쪽.

육, 생활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과교육에서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으로는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바리스타, 전기용접 등의 기능사자격취득 반이 운영되고 있다. 생활지도교육은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시설 내 준수사항과 처우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서 출소 1개월 전의 수용자 대상 취업 및 창업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화활동이 실시되고 있다.²⁴⁾

그러나 소년수형자의 경우 개인적 환경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소년수형자의 교정·교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처우가 아닌 소년수형자의 여러 환경을 고려하는 적극적 처우가 요구된다.

4) 교정보호기관 간의 정보연계 부족

소년법의 재범율을 낮추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소년사법·행정기관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소년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범죄자 정보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한다면 소년범죄자에 맞는 처우가 가능할 것이다.²⁵⁾ 이는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소년법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소년사법·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²⁶⁾ 근대적 소년사법의 기원인

23) 김진아, 앞의 논문, 59쪽.

24) 김천소년교도소의 경우 보호자 좌담회, 인성교육, 수용자 생일축하 모임, 종교 모임, 사회참관, 불우이웃돕기, 음악회, 체육회, 외국어교육, 한자교육, 정보화 교육 등이 있다.

25) 이규호, “사회내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보호연구 제1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5, 144쪽.

미국의 경우 소년법원(juvenile court)과 소년교정시설(juvenile)을 최초로 설립하였다. 소년법원은 1899년 일리노이주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현재 미국의 전 주(州)에서 소년법원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에 따라 해당기관이 차이가 있다. 주요특징은 판결전 조사제도의 광범위한 활용이다. 그리고 세분화된 민간봉사자의 역할이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연방과 주정부의 교부금과 기부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병영훈련프로그램, 가택구금, 전자감시제도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집중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등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호관찰업무는 내무성(Home Office)산하 형사국이나 지자체의 보호관찰위원회이며 이 기관들의 책임 하에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는 선고유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대상자 등이다. 영국은 1972년 사회봉사명령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지금도 사회봉사명령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판결전조사보고서를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본다.²⁷⁾ 한국과의 차이점은 보호관찰업무가 보호관찰소별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소, 집단교육전담보호관찰소, 가석방보호관찰소 등으로 구별하여 대상자에 맞는 처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전조사보고서가 신속히 재판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정부 시절 형사사법개혁의 일환 중에 하나로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 규정(대통령 훈령 제169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공유의 어려움 및 소통부재

26) 정진수 외, 앞의 보고서, 35쪽.

27) 남선모, “한국 소년교정의 현상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61쪽.

와 막대한 예산소요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11일 규정을 폐지하였다. 소년원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소년보호 종합관리 시스템(TEAM)²⁸⁾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²⁹⁾

5) 소년범담당 전문 인력 부족

현재 소년법의 처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교정본부 소관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협업이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년법의 처우에 있어서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정·교화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범죄자처우에 관한 각 기관의 처우가 제각각 이라면 정책의 신뢰도와 대상자의 효과성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요정책의 결정과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교정담당 부서와 보호담당 부서가 상호 공존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목표인 검정고시 합격은 고졸 학력을 취득함으로써 취득 후의 진학이나 취업에서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³⁰⁾

28) 「TEAM」 비행위험성 진단체계는 국내의 저명한 범죄학 및 심리학 관련교수들이 참여하여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정립되었다. 청소년 비행 관련 범죄학 및 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국내 경찰청의 비행 위험성 평가도구 및 선진국의 비행원인 진단지표들(특히 LSI-R)을 벤치마킹하여 비행위험 요인들을 정의하고 있다. 가정환경(보호자 관계, 성장배경), 인성(반항성, 자신감, 초조·우울), 비행성(비행력, 위험성), 약물남용(약물, 음주, 흡연), 여가활동(인터넷 중독, 여가활동), 직업능력(지능적성, 직업흥미), 친구관계(친구영향, 친화성), 학교생활(교사관계, 학업충실도)의 진단영역을 정형화하여 학생별 맞춤형 처우에 활용하고 있다.

29) 김진아, 앞의 논문, 62쪽.

30) 김진아, 위의 논문, 69쪽 이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하면 소년원생들은 퇴원하여 사회에 복귀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 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정고시는 대부분 소년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처분 학생들의 경우 시험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 지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지도인력이 부족한 점도 상대적으로 학업수준이 높고 검정고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응력이 낮은 소년들이 소년원교육에서 적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전문지도 인력의 증원일 것이다.

보호관찰소사무소는 현재 전국 56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직원은 1100여 명이지만, 1인당 평균 150여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은 여전히 과중하다.³¹⁾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소속의 교정직과 보호직공무원은 범죄자처우에 관하여 중복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에 있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가석방에 대한 영역을 양 공무원간에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정직공무원과 보호직공무원은 상호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상호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교정직공무원과 보호직공무원 간의 인사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31) 정진수 외, 앞의 보고서, 62쪽 이하.

2. 소년법 사회내처우의 개선방안

1) 외출제한제도의 확대와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보호관찰은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직원의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효과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³²⁾ 문제는 2008년부터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업무영역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고위험 범죄예방군에 대한 보호관찰인력의 부족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호관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확대된 인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2003년에 도입한 외출제한명령제도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야간에 외출을 제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이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2005년 전국 확대 실시 이후³³⁾ 대상 소년의 2005년 8.7%의 재범률이 2009년 7.0%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크거나 죄질이 불량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 제도는 소년구금의 폐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³⁴⁾ 또한 외출제한명령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제도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32) 2017년 현재 직원 1인당 45명으로 업무의 집중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33) 외출제한명령은 2005년에는 2,737명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7,03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조윤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0쪽).

34)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34쪽.

2) 소년보호시설의 독립

소년법상 소년수탁시설은 비행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처분도 미약한 실정이다.³⁵⁾ 소년법상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릴 때 아동복지법상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 대상 소년과 아동복지법상의 취지에 의해 입소된 아동들이 동일한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호대상 소년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아동복지법에서의 시설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부 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운영의 복잡성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힘들다. 따라서 소년법상 감호위탁 대상 시설에서의 아동복지법상 대상 아동의 수용은 제외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을 통한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감호와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⁶⁾ 또한 소년수탁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내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자 양성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국가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국 단위의 직영 위탁시설의 설치를 통해 지역적 불균형과 시설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충격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미국은 보호관찰 확대의 일환으로 초기단계의 소년에 대해 단기간 신

35) 박상렬, “6호 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205쪽 이하.

36) 이은재, “소년법제의 동향과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보, 통권 제531호, 2011, 80쪽 이하.

체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병영훈련(Boot Camp)체험이 그것이다. 체험 후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구금생활을 최소화하여 구금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이다. 또한 구금의 고통과 엄격함을 단기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충격'을 주자는 것이다. 구금기간 중 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업훈련과 맞춤형 교육 등도 제공된다. 병영훈련체험은 구금의 경험이 없으면서 구금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소년법을 대상으로 한다.³⁷⁾ 대상자 선별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으나 20개 주에는 법관과 교정당국의 명령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4개 주는 보호관찰기관에 선발하고 있다. 모든 대상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자발적으로 퇴원할 수 있다. 이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야간과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충격보호관찰제도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충격보호관찰(병영체험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입소)을 병과하는 방법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명령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다양한 사회내처우의 도입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원송치와 보호관찰처분의 이원화로

37) 충격보호관찰의 유형으로 대표되는 병영훈련은 1983년 조지아주 교정국에서 구금의 대안 프로그램(Special Alternative Incarceration : SAI)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인하여 다양한 대안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의 중간적 단계에서 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개별적인 처우를 개발하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소년원을 퇴원한 소년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사후지도이다. 이를 위해 사후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도 필수적이다. 특히 보호관찰소는 소년법 제32조 제4호 처분, 5호 처분, 가퇴원소년, 가석방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지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³⁸⁾ 영국의 경우 소년범죄의 사후관리에 대해 NOMS³⁹⁾가 담당함으로써 그 동안 있었던 기관간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고 있다.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으로는 귀휴, 가족만남의 집, 사회봉사활동 등은 수행자가 직접 사회로 나가서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고 석방 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며,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 또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행자의 개선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⁴⁰⁾ 하지만 외국의 처우와 비교할 때 다양한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위탁가정(Foster Homes), 청

38) 이은재, 앞의 논문, 80쪽-83쪽.

39) 영국의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CJS)를 볼 때 중앙정부에서 법무행정은 내무부(Home Office)소속 '범죄관리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이 관장한다. 범죄관리국은 교정과, 보호관찰과, 범죄관리프로그램과, 범죄관리과, 정책과, 예산과, 기획혁신과 등 7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정과와 보호관찰과가 소년사법의 집행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즉, 교정과는 소년의 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보호관찰과는 소년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법무부,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2005, 223쪽).

40) 최영신 외,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14쪽 이하.

소년 쉼터(Shelter Care), 그룹 홈(Group Homes),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s)등에서 다양한 생활을 체험하여 사회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그 한 예로 Rawhide Boys 보호시설(Rawhide Boys Ranch)과 체험프로그램(Experience Programs)의 한 예로 Rawhide Boys Ranch(RBR)를 들 수 있다.⁴¹⁾

5) 소년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소년법의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간의 연계강화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소년원은 일부 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⁴²⁾ 그러나 주요 정보의 대부분은 한정적 접근만 인정하고, 소년원의 보호관찰소 기록조회는 공문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된다.

현재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나 많은 비용과 기관 간의 의견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의 교정·교화기관은 소년법의 공통적 부분에 대한 기록 조회 등이 일원화 될 수 있는 체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

41) Rawhide Boys Ranch(RBR)는 1960년도에 생겨났고,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10대 아이들(at-risk teenage)을 위한 위스콘신 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다. RBR은 전형적인 가정상을 모델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개인단체 모두 소년들을 RBR에 위탁할 수 있다. 소년법원 역시 RBR에 소년들을 위탁할 수 있고, 나이 어린 소년범죄자들과 관련된 가족이나 지인들도 RBR의 들어갈 수 있으며, RBR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소년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 (Champion, D. J.,Merlo, A. V., & Benekos, P. J. 2013: 439).

42) 서울소년원에서는 소년법 정보교류 활성화차원에서 2006년부터 소년보호정보시스템의 신상관리, 분류심사, 생활지도, 교무 등 20여종의 정보접근권한을 보호관찰소 측에 부여하고 있다.

년별 정보시스템을 집행기관별로 조사단계, 심리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엄격한 통일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일원화된 관리체계는 비행소년의 기본적인 신상, 심리상태, 가정환경, 범죄경력, 특징 등의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교류된다면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소년범의 자료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IV. 결 론

소년범은 소년의 장래를 위해 형벌보다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내처우의 확대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년범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설내처우에 의한 범죄 학습화는 소년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 측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범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내처우의 경우 시설과 인력의 부족은 관련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기관간의 협업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내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소년사법체계에서 소년범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볼 때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통합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기

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제도의 적극적인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논문 접수 : 2017. 8. 20, 심사 개시 : 2017. 8. 23, 게재 확정 : 2017. 9. 22〉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제2판), 청목출판사, 201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법무부,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2005.
안선영,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최영신 외,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 논문

- 김진아, “소년수형자 문제유형에 관한 연구”, 교정실무연구논집 창간호, 법무부, 2011.
남선모, “한국 소년교정의 현상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박상렬, “6호 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이규호, “사회내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보호연구 제1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5.
이재상·안경옥,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

- 통권 제2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 제16호, 법무부, 2004.
- 이은재, “소년법제의 동향과 입법적 개선방향”, 국회보, 통권 제531호, 2011.
- 오재환,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제도의 성립과 정당성”, 사회과학연구, 제15집,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 정진수·김기환·유병철·이창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조윤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서주연, “미국의 소년교정시설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교정연구 제57호, 한국교정학회, 2012.

Ⅲ. 기 타

법무부(<http://moj.go.kr>)

< ABSTRACT >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f the Juvenile Offenders in Community Treatment

Jeong, Shin-Kyo

The expansion of treatment in society rather than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as already been proved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In Korea,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is also carried out in various societies. However, lack of shelter and lack of manpower cause many problems.

Inefficiency caused by lack of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is also pointed out as a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social treatment, it is required to closely collaborate with juvenile justice and probation office in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is no significant distinction between in-facility treatment and social treatment, and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gr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 and probation centers.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institutions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juvenile offenders.

In addition, active adoption of diverse social treatment systems adopted in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lso, if various social treatment systems like the local community are introduced, it will be a very effective system as well as a reduction of social costs.

◆ Key Words : Juvenile, Community Treatment, Half Way Treatment, Rehabilitation

